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00

발의연월일: 2025. 4. 4.

발 의 자:황운하·강경숙·김재원

윤종오 · 서왕진 · 백선희

신장식 · 정춘생 · 이해민

차규근 · 김선민 · 박은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음.

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온전히 정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들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전세계약들이 아직 다수 있으므로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. 또한 유효기간 내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 만료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불의의 피 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

안정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5조의3 신설,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 조). 법률 제 호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임차인의 재신청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경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 내에 다시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재신청 요건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차인의 재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 내에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3(임차인의 재신청) ①
	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전
	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결과 전
	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되지 아
	<u>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임차인</u>
	이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
	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경 등
	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
	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
	위원회의 존속기한 내에 다시
	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
	등 신청을 할 수 있다.
	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
	결정의 재신청 요건, 방법 및
	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
	교통부렁으로 정한다.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	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
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	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
특별법 부칙	특별법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 후	제2조(유효기간)
<u>2년</u> 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	- <u>3년</u>
을 가진다.	